

붙임1.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마켓 참가기업 추가모집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 HP
	주 소			
	e-mail			
신청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되는 분야에 체크하거나 기타에 직접 기재(중복 체크 가능)</p> <p>정원식물() 정원용품() 정원시설물() 아웃도어() 캠핑() 피크닉() 리빙아트() 기타()</p>			
신청규모	※부스 개소 또는 연출 면적(직접 기재)			
	전시 기간	월 일 ~ 월 일		
	부스(3mx3m) 및 연출 공간	<p style="text-align: center;">부스 ()개소</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내용은 해당할 경우에만 기재</p> <p>전면부 사용 면적 ()㎡ (가로 m, 세로 m) 휴게시설물 종류/개수 () 예시) 퍼걸러 1개소, 티하우스 1개소, 벤치 6개 등 별도 정원 연출 면적 ()㎡ (가로 m, 세로 m)</p>		
전시참가 내용소개	<p>※ 별지 추가 제출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체적인 전시 및 판매 품목 소개(사진 첨부) / 규모 및 수량 부스 전면부 사용 신청서 사용 및 연출 계획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와 별개로 “연출 계획안”을 별도 작성(자유 양식)하여 제출할 경우 정원 연출을 희망하는 가로, 세로 면적 표시 필수</p>			
<p>상기와 같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마켓”에 참가하고자 합니다.</p> <p>2025.</p> <p>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처 : (주)환경과조경</p>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마켓 참가규정

제1조(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마켓'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참가확정)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출품 예정품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별도의 선정 회의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확정한다.

제3조(전시 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 면적, 전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제4조(전시 공간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해약 및 박람회의 취소)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주최자가 지급한 지원금은 반납해야 한다.
2.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참가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6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전시 관련 판매실적 관리)

1. 제품 판매실적(매출 규모) 자료를 주1회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